

의안번호	2200836
의 회 인	이학영의원
회 답 일	2024. 7. 22.
추계번호	24A1314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3 (연합회등의 사업)	○ 연합회등¹⁾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(제1항) － 1.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하는 가맹사업 문화 정착 － 2. 가맹사업자 간 거래조건 협의 및 분쟁발생 시 조정·중재 지원을 위한 사업 － 3. 가맹사업자의 창업·투자·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 － 4. 가맹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창업 등 국제화 촉진 － 5. 가맹사업발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－ 6.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 사업 － 7. 가맹사업자의 구매·유통·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－ 8. 그 밖에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연합회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○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및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1) 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: 2200836)

제15조의2(가맹사업자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조합 및 단체는 가맹본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본부일 것
2. 대표자가 가맹본부(사업자를 말한다)일 것

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·조합 및 단체는 가맹점사업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1.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가맹점사업자일 것
2. 대표자가 가맹점사업자일 것

③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연합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연합회(이하 “연합회등”이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고, 연합회등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3 (연합회등의 사업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지원 및 보조를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안 제15조의3제2항은 동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연합회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및 보조를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될 연합회등의 사업내용 및 규모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연합회등이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연합회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대상 및 규모, 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
 -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안 제15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연합회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 중인 사업이 있음

[표 1] 안 제15조의3제1항각호에 규정된 연합회등의 사업 관련 유사 사업

안 제15조의3제1항각호	관련 유사 사업
1.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하는 가맹사업 문화정착	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(공정위)
2. 가맹사업자 간 거래조건 협의 및 분쟁발생 시 조정 · 중재 지원을 위한 사업	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(공정위)
3. 가맹사업자의 창업·투자·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	프랜차이즈 CEO 대상 전문교육 (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체사업)
4. 가맹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창업 등 국제화 촉진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지원사업 (가맹사업에 특화된 지원사업 없음)
5. 가맹사업발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	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, 한국편의점산업협회
6.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사업	가맹사업 현황조사 (공정위, 매년)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(산업부, 2년주기)
7. 가맹사업자의 구매·유통·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	없음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신헌태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헌태	02-6788-4653	heontshin@nabo.go.kr